

독일의 전자공증제도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법무과

I. 들어가며

독일에서 연방공증인법(Bundesnotarordnung), 증거작성법(Beurkundungsgesetz), 공증인 복무규정(Dienstordnung für Notarinnen und Notare) 등에 의해서 규율되는 종래 공증인의 역할은 의뢰인이 요청에 따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가 수록된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즉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공증임무와 필적 명의인이 직접 서명 등을 작성했다는 사실이나 사본의 상태를 인정해 주는 활동, 즉 서명 등으로부터 일정 사실을 인증하는 임무로 대별될 수 있다.¹⁾ 여기에 전자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전자적 방식이 삶의 각 영역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어가면서 전자공증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5년 시행된 사법소통법(Justiz-kommunikationsgesetz)을 근거로 전자서명 등을 이용한 전자공증이 공증제도에 도입되었다. 전자공증의 개념과 그 포섭범위에 대해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면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기에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현재 독일에서의 전자공증은 주로 증서작성법의 일부 규정과 2007년 1월 1일 발효된 전자



1) 전병서, 각국의 공증법제 비교연구, 2008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08.10., 35-36면 참조.

상업등기부, 협동조합등기부 및 기업등기부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as elektronische Handelsregister und Genossenschaftsregister sowie das Unternehmensregister)에 따른 상업등기 신청방식의 변화와 함께 논의된다. 이하에서는 증서작성법 제39조a의 단순 전자증서, 증서작성법 제42조의 전자적 공증사본, 상법 제12조의 전자상업등기를 중심으로 전자공증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단순 전자증서

1. 관련 사례와 법률 규정

<사례 1> A는 공증인 B에게 C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메일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본인의 서명과 이름, 연락처를 첨부했다. 이런 경우 A는 이메일로 전자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송달했으므로 유효하

게 보증에 대한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가?²⁾

A가 유효하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A가 공증인 B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종이문서와 대등한 효력을 갖는 전자문서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종이문서와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문서의 요건에 대해서는 증서작성법 제39조와 제39조a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증서작성법 제39조 [단순증서]

서명 혹은 서명을 대신하는 십자표(Handzeichen) 혹은 성명서명(Namensunterschrift)에 대한 공증의 경우, 사서증서가 제시된 시점의 확인의 경우, 공적 장부에의 기재에 대한 증명의 경우, 사본, 인쇄본, 사진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본) 그리고 그 외에 단순 증서에 대한 공증의 경우에는, 공정증서(Niederschrift) 대신 증서, 공증인의 서명과 양각도장이나 색 도장(인장)을 반드시 포함하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날짜가 기입된 문서로 충분하다.(공증표시)³⁾



2) Sebastian Blasche, Notarielle Beurkundung, öffentliche Beglaubigung und Schriftform, Jura, 2008.12, S.891

3) 증서작성법 제39조는 증서작성법 제36조의 공정증서대신 서명을 공증하여 공증표시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공증표시(Vermerk)란 증서작성법 제39조의 법률적 정의에 따라 증서(Zeugnis), 공증인의 서명(Unterschrift) 그리고 인장(Siegel)을 반드시 포함하고, 그 밖에 행위가 있는 날짜와 장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문서(Urkunde)를 의미한다. 증서작성법 제39조는 증서, 서명, 공증인의 인장은 Muss-Schrift로 날짜와 장소는 Soll-Schrift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Muss-Schrift는 의무규정으로, Soll-Schrift는 당위규정으로 번역된다. 둘 다 '~를 해야 한다.'로 해석될 수 있지만, Muss-Schrift의 경우 위반 시 공증문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반면, Soll-Schrift 위반 시에는 공증인에게 부여되는 제재와는 별개로 공증문서의 효력까지는 부인되지 않는다.

증서작성법 §39 (Einfache Zeugnisse)

Bei der Beglaubigung einer Unterschrift oder eines Handzeichens oder der Zeichnung einer Namensunterschrift, bei der Feststellung des Zeitpunktes, zu dem eine Privaturkunde vorgelegt worden ist, bei Bescheinigungen über Eintragungen in öffentlichen Registern, bei der Beglaubigung von Abschriften, Abdrucken, Ablichtungen und dergleichen (Abschriften) und bei sonstigen einfachen Zeugnissen genügt anstelle einer Niederschrift eine Urkunde, die das Zeugnis, die Unterschrift und das Präge- oder Farbdrucksiegel (Siegel) des Notars enthalten muß und Ort und Tag der Ausstellung angeben soll (Vermerk).

증서작성법 제39a조 [단순전자증서]

제39조상의 공증서류 기타 증서들은 전자문서로 작성될 수 있다. 이렇게 작성되는 문서에는 반드시 서명법(Signaturgesetz)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 문서는 지속적으로 조사 가능한 인증서에 근거하여야만 한다. 그 증서로써 관할 사무소의 공증인자격(Notareigenschaft)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증서에는 발행지와 발행일이 표시되어야 한다.⁴⁾

2. 전자문서의 특징

1) 전자문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성질이 전혀 다른 매체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은 당연히 종이문서와 차이가 있다. 전자문서는 내장된 문서라서 서명이나 인장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공증인의 서명, 인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는(의무규정, Muss-Schrift) 증거작성법 제39조는 전자문서의 경우와 맞지 않는다. 즉, 기술적인 이유로 전자문서의 경우 서명이나 인장이 첨가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자는 자필서명이나 인장 대신 같은 기

능을 갖는 '전자적 대등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증거작성법 제39조a 1문에서는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제39조 상의 종이문서와 대등하게 취급하고 있고, 심지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토지대장이나 상업등기에서는 전자문서를 종이문서의 전적인 대체물로 인정하고 있다. 등록 또한 종이라는 수단에 구속되지 않는데,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및 관사의 서명도 마찬가지로 전자서명으로 행해지고 더 이상 유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⁵⁾

2) 전자서명

증서작성법 제39조a 2문에 따라 전자증서에는 인증 받은 전자서명이 동반되어야 한다. 전자서명과 자필서명의 대등성은 한편으로는 증거작성법 제39조와 제39조a의 대등적 규율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증 받은 전자서명의 기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인증절차에서는 서명키가 인증서비스제공자(인증기관, Trust Center)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부여되고 보안 서명 생성장치(서명카드)에 저장된다(독일 서명법



4) 증거작성법 § 39a (Einfache elektronische Zeugnisse)

Beglaubigungen und sonstige Zeugnisse im Sinne des §§ 39 können elektronisch errichtet werden. Das hierzu erstellte Dokument muss mit einer qualifizierten elektronischen Signatur nach dem Signaturgesetz versehen werden. Diese soll auf einem Zertifikat beruhen, das auf Dauer prüfbar ist. Mit dem Zeugnis muss eine Bestätigung der Notareigenschaft durch die zuständige Stelle verbunden werden. Das Zeugnis soll Ort und Tag der Ausstellung angeben. (전병서, 앞의 보고서 역)

5) Sebastian Apfelbaum/Jörg Bettendorf, Die elektronische beglaubigte Abschrift im Handelsregisterverkehr, RNotZ Heft 3, 2007, S.90.

제5조 참조). 이후에 고유한 PIN을 카드 리더기에 넣으면 인증 받은 전자서명이 생성되는 것이다. 입법자는 민법 제126조 제3항, 제126조a에서 자필서명과 인증 받은 전자서명의 기능적 동질성을 인정한 바 있다. 전자서명은 서명의 대체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서명카드의 사용과 귀속에 있어서 공증인에게는 철저한 인격성 원칙(das Prinzip der Höchstpersönlichkeit)이 적용된다.⁶⁾

전자서명 관련 기술은 전자적 공증 문서의 생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주 높은 정도의 보안수준에서 서명된 문서의 변환 증명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또 특정인에게 안전한 인증서의 귀속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환 증명이 가능한 것은 서명된 데이터로부터 변형이 불가능한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암호 해독은 누구든지 인증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목록에서 불러올 수 있는 공개 키(public key)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키는 서명자들에 사용되는 개인 키와 수학적으로 조화된다. 이러한 키 조합의 생성에 이용되는 수학적 작용을 통해서 공개 키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개인 키는 산출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산출불능(계산불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인증서는 연방정보기술보안청(Bundesamt für Sicherheit und Informationstechnik)으로부터 정해진 시간 후에 자동적으로

차단된다. 따라서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이 확정한 기간을 간격으로 해서 새롭고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서명카드의 규칙적인 취득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특정인에게 키가 부여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즉 인증기관(Trust Center)이 인증서 수여 시에 신청자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⁷⁾

3) 공증인자격(Notareigenschaft)

증서작성법 제39조a 4문에 의하면 ‘공증인자격(Notareigenschaft)의 확인’ 또한 단순 전자증서를 공증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된다. 이러한 규정을 둔 목적은 공증인자격을 확인하여 인장과 이를 비교가능한 정도로 보증하고,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며, 그 문서(Urkunde)가 공증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 따라서 고권적인 성격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필수불가결한 공증인자격(Notareigenschaft)의 확인은 공증된 전자문서를 인증 받은 전자서명만 있는 다른 사문서와 구별한다. 기술적으로 증서작성법의 제39조a의 요청은 공증인자격(Notareigenschaft)을 확인하는 공증인 특성(Notarattribut)이 공증 서류의 구성요소라는 것을 통해서 현실화된다. 이것은 문서의 서명 시에 자동적으로 서명 데이터의 구성요소가 된다.⁸⁾

6) Sebastian Apfelbaum/Jörg Bettendorf, S.91.

7) 독일공증인협회 홈페이지 (<http://www.bnotk.de/Notar/Urkunde/Elektronisch.php>).

8) Ibid.

4) 시각화와 진실성 조사

앞에서 설명된 전자공증 절차에서는 종이의 경우와는 달리 공증표시에 공증인 서명이나 인장의 형태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그 존재는 오직 서명자나, 서명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청의 자격으로 내리는 지시로 시각화(Visualisierung)를 통하여 확인된다. 서명 조사의 경우 송달된 문서의 수신자를 통해서, 즉 특히 등록법원(Registergericht)에 의해서 인증서의 유효성과 전자문서의 보전이 동시에 확인된다. 입법자는 이러한 절차를 서명법의 기술적 안전성 규정과 관련하여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⁹⁾

3. 사례의 해결

증서작성법 제39조a에 따라 전자서명의 전자공증이 가능해졌는데, 공증인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표의자에 의한 전자서명과, 그 전자서명이 분명히 바로 표의자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A의 경우, 먼저 독일 민법 제766조¹⁰⁾ 제2문에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는 보증의 의사표시는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의 의사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보증관련 사례가 아니었어도 보증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독일 민법 제126조 제1항은 명문으로 의사표시의 표의자는 반드시 그 이름을 첨가해야 하고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서명법에 의거 인증 받은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통 이메일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이름이나 연락처 또는 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자서명은 자필 서명을 그대로 대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독일 민법 제126조a의 전자적 형식은 서명법 제2조 3호에 따르는 인증 받은 전자서명이 요구된다. 게다가 A의 이메일은 증서작성법 제39조a가 요구하는 공증인의 전자서명, 공증인자격 증명 등의 요건도 충족할 수 없다.¹¹⁾

9) Sebastian Apfelbaum/Jörg Bettendorf, S.91.

10) 독일 민법 제766조[보증의사표시의 서면방식] 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증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한다. 보증의 의사표시를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배제된다. 보증인이 주 채무를 이행한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는 치유된다.

BGB § 766 (Schriftform der Bürgschaftserklärung)

Zur Gültigkeit des Bürgschaftsvertrags ist schriftliche Erteilung der Bürgschaftserklärung erforderlich. Die Erteilung der Bürgschaftserklärung in elektronischer Form ist ausgeschlossen. Soweit der Büürge die Hauptverbindlichkeit erfüllt, wird der Mangel der Form geheilt.

11) Sebastian Blasche, S.892.

III. 전자적 공증사본

1. 관련 사례와 법률 규정

<사례 2> D는 공증인 B에게 스스로 서명한 문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 문서는 D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것이라는 문언을 덧붙이고, 연이어 공증인 B에게 전화로 한 번 더 자신이 서명한 문서임을 설명하고 공증을 부탁했다. D는 유효하게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가?

증서작성법 제42조 [사본공증]

(1) 사본의 공증 시에는 그 문서가 원본(Urschrift)인지 정본(Ausfertigung)인지 공증 받은 사본(eine beglaubigte Abschrift)인지 단순 사본(eine einfache Abschrift)인지 밝혀야 한다.

- (2)~(3) 생략 -

(4) 서명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의 출력물인 사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서명에 관한 조사의 결과가 문서화되어야 한다.¹²⁾

2. 전자적 공증사본과 관련된 주요 내용

증서작성법 제42조는 전자문서든 종이든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공증사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입법자는 증서작성법 제42조 제4항에 전자문서의 출력물을 명시하면서 증거작성법 제42조가 전자문서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1) 공증사본의 기능

증서작성법(Beurkundungsgesetz) 제42조라는 특수 규정 외에, 종이 공증사본 및 전자적 공증사본에 대하여 그 생성 절차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자의 결정은 공증사본의 기능 때문이다. 공증인은 공증사본으로 특정 사본의 내용적 일치성을 입증한다. 내용적 일치성 확인은 공적 문서의 공증사본의 증명력 때문에 필요하다. 독일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 제435조에 의하면 증명력은 원칙적으로 공적문서의 원본과 동일하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첫째 공적으로 보관되는 원본을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공적 주체가 내용적 일치성을 이미 확인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³⁾

12) 증서작성법 § 42 (Beglaubigung einer Abschrift)

(1) Bei der Beglaubigung der Abschrift einer Urkunde soll festgestellt werden, ob die Urkunde eine Urschrift, eine Ausfertigung, eine beglaubigte oder einfache Abschrift ist.

(4) Bei der Beglaubigung eines Ausdrucks eines elektronischen Dokuments, das mit einer qualifizierten elektronischen Signatur nach dem Signaturgesetz versehen ist, soll das Ergebnis der Signaturprüfung dokumentiert werden.

13) Sebastian Apfelbaum/Jörg Bettendorf, S.94.

2) 전자사본의 생성 방법¹⁴⁾

종이문서를 전자사본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원본을 스캔한다(동시에 전자문서는 쉽게 변경될 수 없는 TIFF 포맷으로 만들어진다).
- 원본을 출력해서 생성된 자료에 서명과 인장을 보충한다. 원본을 광학적으로 그대로 모사한 스캔 문서와는 달리, 서명 표시와 인장을 다시 써서 재현한다. 서명의 경우 원칙적으로 gez.(서명한 사람의 이름) 이라는 말로, 인장의 경우에는 LS 라는 축약어(서명 대신에 보증함)를 같이 적는다. 만약에 원본(Hauptschrift)이 수기로 적혀진 것이고, 이미 저장된 문언으로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같은 효력을 지닌다. 게다가 보통은 스캔 문서처럼 더 이상 수정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문서의 포맷을 변경한다. 예를 들면 워드로 작성된 문서 포맷은 PDF나 TIFF와 같이 수정 불가능한 포맷으로 바뀐다.

3) 전자사본의 내용적 일치성

앞에 설명한 두 번째 방법은 원본에 서명과

인장을 보충하거나 수기로 적은 원본을 전자문서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므로, 결과적으로 원본과 전자사본은 시각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변형을 거쳐서 작성된 사본을 Leseschrift(이하 '변형된 전자사본')라고 부른다. 관련하여 등기 실무에서 일부 이용되는 이러한 변형된 전자사본(Leseschrift)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원본을 그대로 스캔한 문서만 적법한 전자사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공증사본의 결정적인 의미는 공증인이나 다른 공적주체를 통해 '내용적 일치성'을 확인받는 것에 있다. 따라서 '시각적 일치성'이라는 기준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시각적 일치성은 모든 변형된 전자사본(Leseschrift)에는 없고, 오직 원본의 복사본이나 스캔본에만 존재한다.¹⁵⁾

종이문서의 경우 슬라이드와 카메라의 발명으로, 자필로 쓰거나 타자기로 입력한 공증서류 사본을 변형된 전자사본(Leseschrift)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쉬워졌다. 이러한 사본은 서명이나 gez.(이름) 표시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쉽다. 처음에는 '사본('모사하다'라는 의미에서)'이라는 의미에서, 슬라이드나 사진을 이용한 공증사본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시되기도 했다.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1942년 10월 21일 시행된 증거법의 영역에서의 절차 간소화 시행령(Verordnung zur Vere-



14) Notarnet 홈페이지 참조. http://www.elrv.info/de/elektronischer-rechtsverkehr/praxisfragen-elrv.php?we_objectID=194.

15) Sebastian Apfelbaum/Jörg Bettendorf, S.94.

infachung des Verfahrens auf dem Gebiet des Beurkundungsrechts)을 통하여 적법성을 인정 받았고, 사진의 경우는 1969년 8월 28일 시행된 증서작성법이 제39조의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정리되었다. 여기서 ‘사본(Abschrift)’의 의미가 법률적으로 정의되었는데, “사본, 인쇄본, 사진, 그리고 기타의.... 공증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표현에서 입법자는 ‘사본’의 작성 기술을 문제시 하지 않고 내용적 일치성의 기준에만 주목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기타의’라는 단어 선택에서는 심지어 최근에 이르러 가능해진 전자공증 사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4) 공증표시의 형성

전자 공증사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공증표시 또한 필연적으로 전자적 형식으로 생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서작성법 제39조 a, 제42조의 공증인 특성(Notarattribut)를 통한 공증인자격(Notareigenschaft) 증명을 포함한 인증 받은 공증인의 전자서명과 공증문언의 확정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 인증 받은 전자서명과 공증인특성(Notarattribut)

공증표시란 공적 문서이며 따라서 증서작성

법 제39조a에 따라 공증인자격 증명을 포함한 공증인의 인증 받은 전자서명을 첨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유한 서명 데이터는 PKCS7의 형식으로 작성되고, 이것은 서명한 사본의 데이터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¹⁷⁾

(2) 공증문언(Beglaubigungstext)

공증표시(Vermerk)는 공증인이 사본과 원본의 내용적 일치성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증문언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공증표시는 법률적 교류에 있어서 그 내용을 인식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공증표시가 서명 과정을 거치면서 SigNotar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류에 추가적인 다른 장으로 자동적으로 첨가되면서 만족된다. 덧붙여 보통 일치성 표시(Übereinstimmungsvermerk)에 표시 날짜와 공증인의 이름이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하게 나타난다. 열람 시에 어떤 공증인이 언제 전자공증을 했는지 별다른 서명 혹은 특성검사를 할 필요 없이 문서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름과 날짜의 명시는 순수한 정보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임의적이다. 전자증서(전자 공증사본)의 효력을 위해서는 오직 내용적 일치성에 대한 표시, 인증 받은 공증인의 전자서명, 그리고 공증인 특성을 통한 공증인자격에 대한 증명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¹⁸⁾

16) Sebastian Apfelbaum/Jörg Bettendorf, S.95.

17) Sebastian Apfelbaum/Jörg Bettendorf, S.96.

18) Ibid.

5) SigNotar 프로그램¹⁹⁾

공증인은 인증 받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해서 특수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는 Notarnet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SigNotar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공증인은 공증표시가 첨부된 서명 데이터를 불러오고, 종이 원본과 나타나는 문언과의 일치성을 검사한다. 만약 내용적인 일치성이 인정된다면 서명 과정(Signiervorgang)이 시작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명카드(Signaturkarte)를 카드리더기에 꽂고 고유한 PIN을 입력한다. 만약 PIN이 맞게 입력되었다면 성공적으로 서명이 진행된다.

SigNotar 프로그램에는 공증표시를 위한 예시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내용적 일치성의 확인이라는 주요 쟁점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등록 실무가 시작되던 해부터 산발적으로 나타났던 변형된 전자사본(Leseschrift)이 증거작성법 제38조a, 제42조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은 어찌면 공증표시를 위한 종래 예시문구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일는지도 모른다. 그 당시의 문구는 당위 규정(Soll-Schrift)인 증거작성법 제42조 제1항에 반하여, 근거서류(Ausgangsdokument)의 성격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었다. 증거작성법 제42조에 따르면 근거서류가 원본(Urschrift)인지 정본(Ausfertigung)인지, 공증

받은 사본인지 혹은 단순 사본인지는 반드시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 지침의 흠결은 공증의 무효로 이어지는 않는다(무효는 증거작성법의 강제적 의무규정(Muss-Vorschrift) 위반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음의 표시문언은 이러한 지침을 고려하고 있다.

“본인은 여기에 이 자료에 포함된 도식자료(사본)와 종이 원본, 정본, 공증 받은 사본, 단순 사본 (택 1)이 일치함을 공증한다.”

공증표시의 적절한 내용적 확대는 SigNotar의 업데이트 버전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위와 비교할 수 있는 고전적인 공증표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여기에 놓인 원본(Urschrift)와 사본(Abschrift)이 일치함을 공증한다.”

그 밖에 만약 공증인이 - SigNotar에서의 고전적인 공증표시 문구처럼 - 다만 종이 문서(원본)와의 내용적인 일치성을 확인한 경우, 등록 법원에 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증거가 공증인 앞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통상적인 원본 보존의무(증거작성법 제45조)에 따라 처음부터 원본과 관련되는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만약 공증인이 낯선 공증문서의 공증사본을 작성하고, 그가 이것을



19) Ibid.

등록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면, 또한 그에게 그 증거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형식으로 제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3. 사례의 해결

D는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을 수 없다. D가 보낸 스캔 파일은, 서명을 마친 문서를 스캔하여 만든 전자사본이긴 하지만 전자 공증사본이 되기 위한 요건인 공증표시, 인증 받은 공증인의 전자서명, 공증인자격 증명을 갖추는 없다. 왜냐하면 독일 증서작성법 제40조 제1항²⁰⁾은 오직 공증인 입회하에서 실시되거나 인정된 서명만을 공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D는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공증인 입회하에 서명의 시행’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혹 D가 전화로 자신의 서명을 인정했다고 해도, 실제로 ‘공증인 입회하에 서명의 인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증서작성법 제40조 제1항은 공증인과 서명자(혹은 인정하는 사람)가 같은 장소에 존재하면서, 공증인과 함께 서명을 하거나 인정절차를 거치고, 그것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것을 요구한다. 전화로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같은 다른 형식은 부적법

한 원거리 공증이며, 공증인의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부정공증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증인 B는 D의 서명을 공증해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공증인 B가 공증했다면, 그 공증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증서작성법 제40조 제1항은 단지 당위 규정(Soll-Schrift)이기 때문이다.²¹⁾

III. 새로운 시스템으로서의 전자상업 등기

1. 근거 법률

상법 제12조 [등기를 위한 신청과 송달]

- (1) 상업등기를 위한 신청은 전자적 형태의 사서증서 인증방식으로 제출된다. 신청을 위한 위임장도 같은 방식으로 요구된다. 당사자의 권리계승자는 권리승계를 일반적으로 가능한 공적 문서로 입증해야 한다.
- (2) 문서는 전자적으로 제출된다. 서명이나 단순사본이 제출되거나 문서를 위한 서식이 정해진 경우, 전자적 기록의 송달로 충분하다; 공정증서나 사서증서 인증 사본이 제출된 경우 단순전자증서(증서작성법 제39조)의 요건이 갖춰진 문서로 송달된다.²²⁾

20) 증서작성법 §40 (Beglaubigung einer Unterschrift)

(1) Eine Unterschrift soll nur beglaubigt werden, wenn sie in Gegenwart des Notars vollzogen oder anerkannt wird.

21) Sebastian Blasche, S.895.

22) 독일 상법 §12 (Anmeldungen zur Eintragung und Einreichungen).

전자상업등기부, 협동조합등기부 및 기업등기부에 관한 법률(EHUG)에 의하여 개정된 독일 상법(HGB) 제12조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부터 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전자적 형식으로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업등기절차의 전체적인 전환을 불러왔다. 이러한 시스템 전환은 당연히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련의 불안정성을 불러일으켰는데, 왜냐하면 수십 년간 이루어졌던 관행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전까지는 실무적으로 상업등기 신청서 원본을 등록법원에 제출한 반면, 이제부터는 공증서류를 전자적으로 등록법원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²³⁾

2. 전자 상업등기신청 절차

실무상 절차진행은, 제1단계로 지금까지와 같이 종이로 되어 있는 상업등기부등록신청서에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추가적으로 공증인은 통상적인 서명인증표시를 하여 상업등기부신청서에 첨부한다. 2단계로 이러한 종이

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결과적으로는 전자적으로 공증된 사본을 작성한다. 그리고 이 전자 공증사본을 보내는 것으로 송달이 이루어진다.²⁴⁾ 즉, 오늘날 원칙적으로 상업등기 신청이 두 단계로 구분된다.

- 첫 번째 단계에서는 종전과 같이 종이로 된 상업등기 신청서에 신청자가 자필로 서명한다. 여기에 공증인이 부가적으로 서명을 공증함을 기재하고 이것을 상업등기 신청서에 첨부한다. 여기까지는 이전 형식과 다르지 않다.
-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종이증서를 전자적인 형식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자적으로 공증사본의 생성(Die Erstellung elektronischer beglaubigter Abschriften)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종이 원본의 전자사본을 만들거나, 공증사본(Abschriftsbeglaubigung)을 전자증서로 만드는 방법이 사용된다.

(1) Anmeldungen zur Ein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sind elektronisch in öffentlich beglaubigter Form einzureichen. Die gleiche Form ist für eine Vollmacht zur Anmeldung erforderlich. Rechtsnachfolger eines Beteiligten haben die Rechtsnachfolge soweit tunlich durch öffentliche Urkunden nachzuweisen.

(2) Dokumente sind elektronisch einzureichen. Ist eine Urschrift oder eine einfache Abschrift einzureichen oder ist für das Dokument die Schriftform bestimmt, genügt die Übermittlung einer elektronischen Aufzeichnung; ist ein notariell beurkundetes Dokument oder eine öffentlich beglaubigte Abschrift einzureichen, so ist ein mit einem einfachen elektronischen Zeugnis (§§ 39a des Beurkundungsgesetzes) versehenes Dokument zu übermitteln.

23) Sebastian Apfelbaum/Jörg Bettendorf, S.92.

24) 독일공증인협회 홈페이지 참조(<http://www.bnotk.de/Notar/Urkunde/Elektronisch.php>).

3. 공증인의 준비의무

공증인이 인증 받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서명카드가 필요하고, 이것은 독일 공증인협회의 인증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다. 동시에 카드리더기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Notarnet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SigNotar와 XNotar라는 프로그램이 있다.²⁵⁾ 연방 공증인법 제15조 제3항에서는 ‘위 1항 및 2항과는 달리, 공증인은 증서작성법 제39a조, 제42조 제4항의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장치(기자재)를 구비할 수 없는 한에서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공증인은 늦어도 2006년 4월 1일부터는 제1문에 따른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기자재)를 적어도 1대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²⁶⁾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증인에게 전자공증을 위한 준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IV. 결론

독일 증서작성법(BeurkG) 제39a조가 단순 전자증서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종래 공증인이 행하던 모든 활동을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증인의 활동 범위가 전자공간에서 매우 확대되리라는 예측이 있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실무적으로 대단한 변화가 초래된 것은 아니다.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문서의 성격만 변화했을 뿐, 공증인이 행할 수 있는 인증 업무의 범위나 공증인 대면요건 등이 종이문서로 행하는 인증업무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공증을 통해서 공증인을 방문하지 않고도 적법하고 유효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려면, 완벽한 본인확인 및 보안 기술의 발전과 기타 관련 법제가 완비되어야 하고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현재 전자공증이 실무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분야는 유한회사(GmbH) 설립등기 등과 같은 상업등기신청(Handelsregisteranmeldung)이라고 할 수 있다.

구 슬

(독일 하노버대학교 박사과정)

25) Ibid.

26) 연방 공증인법 § 15

(3) In Abweichung von Absatz 1 und 2 darf der Notar seine Amtstätigkeit in den Fällen der §§ 39a, 42 Abs. 4 des Beurkundungsgesetzes verweigern, soweit er nicht über die notwendigen technischen Einrichtungen verfügt. Der Notar muss jedoch spätestens ab dem 1. April 2006 über zumindest eine Einrichtung verfügen, die Verfahren nach Satz 1 ermöglicht. (전병서, 앞의 보고서 역)

참고문헌

전병서, 각국의 공증법제 비교연구, 2008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08.10.

Sebastian Blasche, Notarielle Beurkundung, öffentliche Beglaubigung und Schriftform, Jura Heft, 2008.12.

Sebastian Apfelbaum/Jörg Bettendorf, Die elektronische beglaubigte Abschrift im Handelsregisterverkehr, RNotZ Heft3, 2007.

Sigrun Erber Faller, Elektronischer Rechtsverkehr und ele-

ktronische Urkunde -woher kommt der Weg und wohin führt er?, Notar und Internationalisierung : Festschrift für Helmut Fessler zum 70. Geburtstag, 2013.

독일공증인협회 홈페이지

<http://www.bnotk.de/Notar/Urkunde/Elektronisch.php>

Notarnet 홈페이지

http://www.elrv.info/de/elektronischer-rechtsverkehr/praxisfragen-elrv.php?we_objectID=194